

- 기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설 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 Ⓐ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는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주차장의 주차부분의 높이는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0m 이상이어야 한다.
 - Ⓓ 바닥으로부터 85cm의 높이에 있는 지점은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정답 : Ⓛ

주차장의 주차부분의 높이는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이어야 한다.

- 예상** 주차장 법령상 차로의 폭이 가장 넓은 것은? (단,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 Ⓐ 평행주차
- Ⓑ 직각주차
- Ⓒ 교차주차
- Ⓓ 60° 주차

· 정답 : Ⓞ

직각주차의 차로 폭이 6m로서 가장 넓다.

핵심79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

1) 노외주차장 조도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 최소 조도는 10룩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 최소 조도는 300룩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 최소 조도는 50룩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2) 차로의 구조

①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구조기준을 적용한다.

② 높이 : 바닥 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곡부 :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면 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상으로 한다.

④ 진입로(경사로)의 차로 폭

1. 직선인 경우	3.3m 이상 (2차선인 경우 6m 이상)
2. 곡선인 경우	3.6m 이상 (2차선인 경우 6.5m 이상)

⑤ 진입로(경사로)의 종단구배

1. 직선부분	17% 이하
2. 곡선부분	14% 이하

*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cm의 거리를 띠어 10~15cm의 연석을 설치해야 한다.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m 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3) 감시설비

주차대수 30대 초과시 주차장 내부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범 설비를 주차장 바닥면에서 70cm 높이에 있는 사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자동차용 승강기의 설치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 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 Ⓐ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진입로의 경사로는 직선부분에서는 17% 이하로 한다.
- Ⓒ 주차장의 주차부분의 차로의 높이는 주차 바닥면 으로부터 2.3m 이상이어야 한다.
- Ⓓ 주차대수 20대초과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 정답 : Ⓢ

주차대수 30대초과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예상문제 없음

핵심80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2. 문화 및 접대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3. 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 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제외)	시설면적 50m ² 초과 150m ²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m ² 초과의 경우 : 1대에 150m ² 를 초과하는 10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가구주 택 오피스텔	주택법 규정 적용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 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m ² 당 1대
8. 창고 시설	시설면적 400m ² 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